## 지침 개정 이력

- □ 개정일 : 2021. 12.
  - 개정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업총괄본부 건설안전단
  - 개정사유 :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(굴삭기→굴착기) 및 굴착기 운용 시 작업자와의 충돌 등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 추가
  - 주요 개정내용
    - 지침 전체 용어 변경(굴삭기→굴착기)
    - 작업 전 운전자의 확인사항에 전·후진 경고음 및 카메라 등의 부착 및 작동여부 확인 준수 추가
    - <표1> 굴착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전면수정
- □ 개정일 : 2022. 00.
  - 개정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실
  - 개정사유 :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및 굴착기 운용 시 근로자 통제 범위 명확화 등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 현행화
  - 주요 개정내용
    - 지침 전체 용어 변경(안전벨트→좌석안전띠)
      - ┗,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1조의3 제2항
    - 중점 유해·위험 요인 파악 사항에 작업반경 범위 명확화 └,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18호
    - 중점 유해·위험 요인 파악 사항에 후방영상표시 장치 추가 └,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1조의2 제2항
    - 지침 전체, 인양·양중작업에 대하여 장비의 목적외 사용금지 문구 삭제 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1조의5 제1항